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서상열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1050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8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3. 8. 21.

2. 제 안 사 유

-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- 미국,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에 맞서 실내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,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역시 실내공기 중 인체 유해성, 감염성을 고려한 미생물 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음.
- 특히,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.
- 이에,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실내공기 중 위해성·감염성 등을 고려한 미생물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

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합리적인 미생물 관리를 위한 지원(안 제6조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책임자가 인체 유해성·감염성 등을 고려한 미생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·재정적·행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바,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 바임.

-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란 세균, 진균, 바이러스 등을 포함¹⁾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으나, 상위법인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은 총부유세균과 곰팡이만을 미생물 오염물질로 한정하고 있는바,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‘미생물 관리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 입안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또한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미생물에 대한 시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, 관련 법령에도 미생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‘미생물 관리’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‘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관리’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
1) 미생물: 세균(박테리아), 진균(곰팡이 등 균류), 바이러스 등을 포함

- 세균: 일반세균(산균·나토균·초산균 등), 병원성(포도상구균·장내구균·연쇄상구균·결핵균·대장균 등)

- 바이러스: 독감, 메르스, 사스, 코로나, 천연두, 간염, 식중독 등

<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(안)
<p>제6조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<u>실내공기질이</u>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<u>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하고 실내공기 중 인체 유해성·감염성 등을 고려한 미생물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</u>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의 <u>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</u>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하도록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